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조치결과보고

[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]

- 점검일시 : 2018.03.28 (수)
- 조치결과
- ◆ 점검자 : 함창록, 박수엽

지적내용	점검사진	조치일자	조치사진
		조치내용	
<p>○ 기계기구 안전</p> <p>- 향타기 조립장에 사용 중인 혹은 해지장치를 부착하고 사용하기 바람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규칙 제168조(변형되어 있는 훅, 샤클등의 사용금지 등)</p>		2018.03.30	
		<p>해당 훅 반출 및 해지장치 부착 혹은 사용</p>	
<p>○ 건설기계 안전</p> <p>- 현장에 작업중인 크레인 등 건설장비는 장비실명제를 부착하여 관리하기 바람.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29(건설기계)</p>		2018.03.30	
		<p>현장 내 모든 건설장비 장비실명제 부착 완료</p>	
<p>○ 감전재해 예방</p> <p>- 가설 분전반 내부 충전부는 Cover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분전반의 회로도를 부착하여 관리하기 바람.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16(분전반)</p>		2018.03.30	
		<p>충전부 절연테이프 부착 및 회로도 부착 완료</p>	

<p>○ 감전재해 예방</p> <p>- 용접기 외부에 부착된 분전반은 아래사항에 대하여 조치 바람</p> <p>① 충전부 보호조치 ② 접지선이 단락된 가설전선은 접지선 연결.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16(분전반), 공통-17(가설전선)</p>		<p>2018.03.30</p> <p>충전부 보호조치 및 외함 접지 설치 완료</p>	
<p>○ 기타 안전관리</p> <p>- 항타 작업구간(파일인양, 운반, 시공) 반경내에는 관련작업자 외 출입을 통제하고 가스통등 위험물등이 적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바람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규칙 제35조(관리감독자의 유해, 위험방지 업무 등)</p>		<p>2018.03.30</p> <p>용접작업 위험물 항타 작업구간 반경 외로 이동 조치 완료</p>	
<p>○ 기타 안전관리</p> <p>- 현장에 설치된 가설사무실은 명패(업체명, 사용기간, 관리책임자, 연락처)설치 및 외함접지 후 관리하기 바람.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41(가설 사무실, 창고)</p>		<p>2018.03.30</p> <p>가설사무실 명패 및 외함 접지 설치 완료</p>	